과목 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
2000 사회개발비		93,889,197	82,991,057	10,898,140	[국 38,215,807 시 17,846,932 양 365,000 구 37,461,458]
2300 사회보장비		56,449,194	51,417,687	5,031,507	[국 33,637,847 시 11,263,410 양 0 구 11,547,937]
2310 사회복지		56,449,194	51,417,687	5,031,507	[국 33,637,847 시 11,263,410 양 0 구 11,547,937]
2311 사회복지		7,135,570	5,422,638	1,712,932	[국 2,333,668 시 2,895,269 양 0 구 1,906,633]
100 경상예산		376,142	298,270	77,872	
110 인건비		15,834	11,605	4,229	
	101 인건비	15,834	11,605	4,229	
		15,834	11,605	4,229	04 일용인부임 ○ 기본급 444 ㅇ 용봉복지회관관리원 (경정)24,240 x 1명 x 300일 - (기정)22,760 x 1명 x 300일 = 444 ○ 상여금 (경정)7,272,000 x 4/12 - (기정)2,276,000 = 148 ○ 초과근무수당 33 ㅇ 시간외근무수당 (경정)4,129 x 1명 x 150시간 - (기정)3,914 x 1명 x 150시간 = 33 ○ 주휴수당 (경정)24,240 x 1명 x 52일 - (경정)22,760 x 1명 x 52일 = 77

과목 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
					○ 년월차 유급휴가수당 (경정)7,272,000 x 32/300 - (기정)729,000 = 47
					○ 정액급식비 80,000 x 1명 x 12월 = 960
					○ 교통보조비 100,000 x 1명 x 12월 = 1,200
					○ 가계보조비 80,000 x 1명 x 12월 = 960
					○ 위생수당 30,000 x 1명 x 12월 = 360
120 경상적경비		360,308	286,665	73,643	
	201 일반운영비	178,734	120,815	57,919	
		178,734	120,815	57,919	01 일반운영비
					○ 예산절감 (경정)120,815,000 x 90% - (기정)120,815,000 = △12,081
					○ 임차료 70,000
					ㅇ 일곡동 일신경로당 임차 (경정)0 - (기정)30,000,000 = △30,000
					ㅇ 두암1동 경로당 임차 = 50,000
					ㅇ 북성여자경로당 임차 = 50,000
	202 여비	28,530	31,700	△3,170	
		28,530	31,700	△3,170	01 국내여비

과목 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
					○ 예산절감 (경정)31,700,000 x 90% - (기정)31,700,000 = △3,170
	301 일반보상금	8,671	2,250	6,421	
		3,000	0	3,000	01 사회보장적수혜금 ○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(추석) 20,000 x 150명 = 3,000
		3,421	0	3,421	08 공익근무요원보상금 ○ 봉급 19,800 x 2명 x 12월 = 476 ○ 상여금 19,800 x 2명 x 50% x 4월 = 80 ○ 중식비 3,000 x 2명 x 25일 x 12월 = 1,800 ○ 교통비 1,400 x 2명 x 25일 x 12월 = 840 ○ 피복비 112,250 x 2명 = 225
	307 민간이전	106,273	93,800	12,473	
		37,873	32,400	5,473	02 민간경상보조 ○ 장애인21주말학교 운영 = 5,473
		47,000	40,000	7,000	03 사회단체보조금 ○ 장애인 도우미제 운영 7,000 ㅇ 자원봉사자 교통비 10,000 x 5명 x 10일 x 6월 = 3,000

과목 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
					ㅇ 자원봉사자 교육비 등 = 4,000
200 사업예산		6,759,428	5,124,368	1,635,060	[국 2,333,668 시 2,895,269 양 0 구 1,530,491]
210 보조사업		5,259,428	5,124,368	135,060	[국 2,333,668 시 2,895,269 양 0 구 30,491]
	301 일반보상금	1,043,932	969,400	74,532	
		1,020,200	945,668	74,532	01 사회보장적수혜금 ○ 장애인 수당 지원 (경정)114,000,000 - (기정)39,468,000 = 74,532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시) 114,000 - 39,468 = 74,532
	307 민간이전	3,540,614	3,834,695	△294,081	
		3,414,114	3,708,195	△294,081	05 민간위탁금 ○ 종합사회복지관 운영(7개소) (경정)841,277,000 - (기정)801,209,000 = 40,068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국) 210,319 - 200,302 = 10,017 (시) 630,958 - 600,907 = 30,051 ○ 종합사회복지관부설 재가복지센터 운영 (경정)340,536,000 - (기정)324,312,000 = 16,224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국) 238,375 - 227,018 = 11,357 (시) 102,161 - 97,294 = 4,867

과목		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○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(경정)135,282,000 - (기정)173,535,000 = △38,253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국) 89,737 - 100,474 = △10,737 (시) 45,545 - 73,061 = △27,516 ○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(경정)138,600,000 - (기정)197,961,000 = △59,361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국) 97,020 - 138,572 = △41,552 (시) 41,580 - 59,389 = △17,809 ○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(1개소) (경정)646,737,000 - (기정)689,340,000 = △42,603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국) 258,695 - 275,736 = △17,041 (시) 388,042 - 413,604 = △25,562 ○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(1개소) (경정)43,540,000 - (기정)125,821,000 = △82,281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국) 17,416 - 50,328 = △32,912 (시) 26,124 - 75,493 = △49,369 ○ 장애인체육관 운영 (경정)57,104,000 - (기정)97,430,000 = △40,326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국) 21,414 - 36,536 = △15,122 (시) 35,690 - 60,894 = △25,204

과목 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
					○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운영(1개소) (경정)25,200,000 - (기정)56,587,000 = △31,387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국) 10,080 - 22,634 = △12,554 (시) 15,120 - 33,953 = △18,833 ○ 장애인 종별복지관 운영 (경정)677,019,000 - (기정)826,532,000 = △149,513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국) 270,807 - 330,612 = △59,805 (시) 406,212 - 495,920 = △89,708 ○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(1개소) = 91,877 (국) 27,563 (시) 64,314 ○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(1개소) = 43,750 (국) 13,125 (시) 30,625 ○ 장애인 그룹홈 운영(엠마우스복지관) (경정)15,000,000 - (기정)57,276,000 = △42,276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시) 15,000 - 57,276 = △42,276
	401 시설비및부대비	528,000	0	528,000	
		528,000	0	528,000	01 시설비 ○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(직업재활시설신축) = 528,000

과목 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
					(국) 264,000 (시) 264,000
	402 민간자본이전	93,166	269,166	△176,000	
		93,166	269,166	△176,000	01 민간자본보조 ○ 사회복지관 개보수 = 20,000 (시) 10,000 (구) 10,000 ○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(경정)70,666,000 - (기정)248,596,000 = △177,930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국) 21,200 - 74,579 = △53,379 (시) 49,466 - 174,017 = △124,551 ○ 푸드뱅크사업 장비구입비 = 2,500 (국) 1,250 (시) 1,250 ○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(경정)0 - (기정)20,570,000 = △20,570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국) 0 - 10,285 = △10,285 (시) 0 - 10,285 = △10,285
	405 자산취득비	53,716	51,107	2,609	
		53,716	51,107	2,609	01 자산및물품취득비 ○ 사회복지전담공무원 PDA구입(78명) (경정)53,716,000 - (기정)51,107,000 = 2,609

과목 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
					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국) 42,972 - 40,886 = 2,086 (구) 10,744 - 10,221 = 523
220 자체사업		1,500,000	0	1,500,000	
	401 시설비및부대비	1,500,000	0	1,500,000	
		1,467,900	0	1,467,900	01 시설비 ○ 북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축(특별교부세) 1,500,000,000 x 97.86% = 1,467,900
		26,700	0	26,700	02 감리비 ○ 북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축(특별교부세) 1,500,000,000 x 1.78% = 26,700
		5,400	0	5,400	03 시설부대비 ○ 북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축(특별교부세) 1,500,000,000 x 0.36% = 5,400